2. 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 규정
가. 금융투자업규정 (신용공여대주의 최소담보비율 인하 등)

2. 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 규정*

가. 금융투자업규정 (2024/10/2 개정 · 2025/3/31 시행)

1) 개정 이유

□ 신용공여대주의 최소담보비율을 인하하고, 신용공여대주의 담보로 제공되는 증권의 가치평가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자가 자율규제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담보비율 등(제4-25조 제1항)

— 기존 120%인 신용공여대주의 최소담보비율을 105%로 인하

□ 담보로 제공된 증권의 평가 등(제4-26조 제1항)

— 신용거래대주의 담보로 제공되는 증권의 가치평가에 대해서는 협회가 정하도록 규정하여 금융투자업의 자율규제로 위임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